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2667
등록일자	2016.1.25.
결재일자	2016.1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활용관리팀장	청소행정과장	복지환경국장	
장수현	남기재	신동문	전결 01/25 이우룡	
협조				

2016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·점검 계획



복지환경국
청소행정과

2016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·점검 계획

설 명절을 맞이하여 과대포장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·소비자 비용부담 증가,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▶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▶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
- ▶ 「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
- ▶ '16년 설날 과대포장 점검계획[서울시 자원순환과-268(2015.1.7.)]

II 점검 개요

- ▶ '15년 과대포장 점검실적

구 분	우리구		타 기관 부과요청		비 고
	점검횟수	점검실적 (타기관 부과회)	행정처분	과징금 부과	
합 계	3회	2건	10회	8,200천원	

- ▶ 점검기간 : 2016. 2. 3.(수) ~ 2. 4.(목)
- ▶ 점검대상 : 관내 대형 유통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)

연번	구 분	상 호	면 적	비 고
1	백 화 점	신세계백화점 본점	18,549	
2	백 화 점	롯데쇼핑 본점 영프라자	14,712	
3	백 화 점	롯데백화점 본점	80,260	
4	백 화 점	서울역 롯데 아울렛	15,772	
5	대형마트	롯데마트 서울역점	18,707	
6	대형마트	신세계이마트 청계천점	26,277	

※ 제과류, 농산물류(과일, 육류 등), 주류(양주, 민속주 등), 화장품류, 잡화류(완구·인형류, 벨트, 지갑) 등 선물세트 집중 점검

■ 점검내용

- 포장공간비율(품목별 10%~35% 이내) 및 횡수 제한(품목별 1차~2차 이내)
- 포장재질(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)

■ 점검인원 : 3명

- 구 담당 2명, 전문기관 연구원 1명 합동점검 실시

Ⅲ 세부 추진 계획

■ 과대포장 점검절차 및 방법

1.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

- 제품의 종류 확인(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화장품 등)
- 단위제품·종합제품 여부 확인
 -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
 -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횡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종합제품 받침접시, 완충제의 재질 확인
 -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·PVC·합성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% 이하

2.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횡수 측정

3.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

-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
 - 한국환경공단(032-590-4915)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02-2102-2777)

4.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

■ 과대포장 지도·점검시 착안사항

1. 제과류

- 포장공간규제를 받지 않던 제과류 포장의 공기(질소)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 비율 적용(35% 이하)

2. 주류·화장품류

- 종합제품 정의 변경에 따라 단위·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
 - 주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, 그 구성품, 소량 비매품(증정품),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
 -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이는 투명 필름류는 포장 횟수에서 제외

3. 완구·인형류

-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

4. 건강기능식품

-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제품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하여 위반되는 사례 발생
- 포장 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 대상에서 제외

5. 1차식품
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

6. 기 타

-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구성품(예 : 포장된 분말·액상스프, 색깔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, 조립용 부속품 포장)은 포장횟수에서 제외

처리절차

순서	현장점검 절차 및 요령준수
1	단속대상 사전연락, 업체담당자 안내
2	의심품목 선택,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
3	점검대상 품목 여부 확인
4	검사성적서 제출요구 및 확인
5	검사명령서 발행 (검사성적서 부재시 또는 과대포장 의심시)
6	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확인 (20일 이내)
7	부적합시 과태료 부과 (5일 이내)

IV 행정사항

- 「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사명령 및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
-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: 2015. 3. 11.(금)까지

붙임 : 1. 서울시 계획안 1부.
2. 단속결과 서식 1부. 끝.